

제154회 해양경찰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

□ 일시·장소: '26. 9. 2.(수) 14:00 ~ 15:50 /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참 석 자

└ 지은석·김은정 위원 불참

○ 해양경찰위원회 : 김재봉 위원장 등 해양경찰위원 5명(온라인 출석)

○ 해 양 경 찰 청 : 수사심사과장, 구조협력계장, 위원회담당관 등 4명

□ 개최 결과: 심의·의결 1건(수정의결 1), 보고 1건

【심의·의결 1건】

연번	형식	안 건 명	주 요 내 용	심의 결과	부서
1	훈령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수색·구조 규정」 제정안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2(수색·구조)의 국제기준을 반영한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수색·구조 규정 제정 ※ (주요내용) △ 항공구조조정본부 운영 △ 수색·구조 인력·조직운영 △ 수색구조활동 및 국내외 협력 방안 등 수정사항 「수상구조법」상 구조조정본부와 혼동이 없도록 '항공구조조정본부'로 명확히 규정 기존 구조조정본부 → 변경 항공구조조정본부 수정사항 구조조정본부의 설치·운영을 우선 규정하고 소속 인력을 후속 조문에 두도록 구성을 수정 등	수정 의결	수색 구조

【보고 1건】

연번	안 건 명	부서
1	9월 주요 업무보고	기획재정

첨부1

수정의결 사항

□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수색·구조 규정」 제정안

상 정 안	수 정 의 결
제8조(구조조정본부의 운영) ① 해상에 서의 항공기 조난 시 수색·구조 조정 업무를 위한 구조조정본부는 지방해 양경찰청으로 한다.	제8조(구조조정본부의 운영) ① ----- ----- ----- ----- 하며, 항공구조조정본부의 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생 략)
③ 구조조정본부는 공해 또는 주권미확 정해역의 수색·구조업무를 다른 국가 의 수색·구조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③ -----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 -----.

수정사유 ① 조문 전반에 걸쳐 '항공구조조정본부의 장'에게 다양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그 '장'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시가 없어, 실제 권한·의무를 지는 행정주체가 불명확함. 항공구조조정본부가 지방해양경찰청인 점을 고려하여, 제8조제1항에 '항공구조조정본부의 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고 명시
② 제3항의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수행함에 있어서'를 추가

상 정 안	수 정 의 결
제2장 수색·구조 조직 및 임무	제2장 수색·구조 조직 및 임무
제5조(협력관 등의 배치) (이하 생략)	제5조(구조조정본부의 운영) (이하 생략)
제6조(협력관 등의 자격·선발) (이하 생략)	제6조(협력관 등의 배치) (이하 생략)
제7조(협력관 등의 임무) (이하 생략)	제7조(협력관 등의 자격·선발) (이하 생략)
제8조(구조조정본부의 운영) (이하 생략)	제8조(협력관 등의 임무) (이하 생략)

수정사유 상위 개념인 구조조정본부의 설치·운영을 먼저 규정한 뒤 그 소속 인력을 후속 조문에 두는 것이 체계상 자연스러우므로, 제8조(운영)를 제5조로 이동하고 현 제5조부터 제7조를 제6조부터 제8조로 수정

상 정 안	수 정 의 결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구조조정본부”란 항공구조조정본부(Aeronautical Rescue Coordination Center: ARCC)로 수색·구조 구역 안에서 수색·구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색·구조 활동을 조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 “ <u>항공구조조정본부(Aeronautical Rescue Coordination Center: ARCC)</u> ”란 ----- ----- -----.
2. “수색·구조구역(Serach and Rescue Region: SRR)”이란 구조조정본부가 수색·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일정한 범위를 가진 구역을 말한다.	2. ----- ----- <u>항공구조조정본부</u> ----- ----- -----.
※ <u>이하 제2조제11호부터 제24조제3항까지와 별표 2의 ‘구조조정본부’를 ‘항공구조조정본부’로 일괄 수정(79개)</u>	
수정사유 이 규정의 ‘구조조정본부’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구조본부 ¹⁾ 와 명칭이 유사해 혼동 우려가 있어, 양자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정식 명칭인 ‘항공구조조정본부’를 사용하여, 제2조제1호 정의를 ‘항공구조조정본부’로 정하고 본문·별표의 ‘구조조정본부’를 전부 ‘항공구조조정본부’로 일괄 수정	

1)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해양경찰청에 중앙구조본부, 지방해양경찰청에 광역구조본부, 해양경찰서에 지역구조본부를 두어 ‘구조본부’라 함.

상 정 안	수 정 의 결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4. (생 략) 15. “불확실상황(Uncertainty phase)”이란 항공기 및 탑승객의 안전이 불확실한 다음 각 목의 상황을 말한다. 가. (생 략) 나. 항공기가 마지막 통보한 도착예정시간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예상한 도착예정시간 중 더 늦은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도착하지 아니할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객의 안전이 의심되지 아니할 때는 제외한다. 16. “경보상황(Alert phase)”이란 항공기 및 탑승객의 안전이 염려되는 다음 각 목의 상황을 말한다. 가~라. (생 략) 17. “조난상황(Distress phase)”이란 항공기 및 탑승객이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에 처해 있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확실시되는 다음 각 목의 상황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14. (생 략) 15. ----- ----- 탑승자----- ----- . 가. (생 략) 나. ----- ----- ----- ----- 탑승자----- -----. 16. ----- ----- 탑승자----- -----. 가~라. (생 략) 17. ----- ----- 탑승자----- ----- -----.
수정사유 규정 내 혼용된 용어를 일괄 '탑승자'로 통일하도록 수정	

상 정 안	수 정 의 결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9. "ASAC"란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Aeronautical Search and rescue Assistance Center)로 「항공안전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2에 따라 우리나라 수색·구조구역에서 항공기 경보, 감시 등 수색·구조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u>항공교통본부를</u> 말한다. 10. "협력관"이란 항공수색·구조협력관으로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ASAC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항공교통본부에 파견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11. (생 략) 12. "경보소(Alerting post)"란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에 따라 항공종사자 등으로부터 비상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해 이를 ASAC 및 구조조정본부에 통보하도록 항공교통본부장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14. (생 략) 9.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Aeronautical Search and rescue Assistance Center: ASAC)"란 ----- ----- ----- ----- ----- 조직을 -----. 10. ----- ----- -----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ASAC) ----- ----- -----. 11. (생 략) 12. ----- ----- -----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ASAC) ----- -----.
제5조(협력관 등의 배치) ① 해양경찰청장은 구조조정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항공교통본부 소속 ASAC에 협력관과 각 지방해양경찰청에 임무담당자를 배치한다.	제5조(협력관 등의 배치) ① ----- ----- -----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ASAC) ----- -----.

상 정 안	수 정 의 결
제7조(협력관 등의 임무) ① (생 략) 1. 위성조난신호 및 항공기 ELT 신호 접수 시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에 실제상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② (생 략) 1. 위성조난신호 및 항공기 ELT 신호 접수 시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에 실제상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제7조(협력관 등의 임무) ① (생 략) 1. ----- 비상위치지시 용무선표지설비(ELT) ----- ----- ----- ② (생 략) 1. ----- 비상위치지 시용무선표지설비(ELT) ----- ----- -----
제8조(구조조정본부의 운영) ④ (생 략) 1. (생 략) 가. ASAC, 경보소, 구조대	제8조(구조조정본부의 운영) ④ (생 략) 1. (생 략) 가. 항공수색 · 구조지원센터(ASAC), -----
제12조(비상상황별 조치) ② (생 략) 1. (생 략) 가. ASAC, 경보소 및 항공교통업무기관으로부터 비상상황에 처해 있는 항공기의 정보 수집 나. 비상상황에 처해 있는 항공기에 대하여 ASAC와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지속적인 교신을 요청하고, 교신 결과를 공유 2. ~ 3. (생 략) 나. 인근 항공기, 선박 등에 조난항공기의 무선 전송 내용 청취 요청(다만, 인근항공기 무선 전송 내용 청취에 관한 사항은 ASAC 및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요청)	제12조(비상상황별 조치) ② (생 략) 1. (생 략) 가. 항공수색 · 구조지원센터(ASAC), ----- ----- 나. ----- ----- 항공수색 · 구조지원센터(ASAC) ----- ----- ----- 2. ~ 3. (생 략) 나. ----- ----- ----- ----- 항공수색 · 구조지원센터(ASAC) ----- -----
수정사유 우리말 용어를 우선 표기하고 영문 약어를 괄호 안에 병기하도록 수정	

상 정 안	수 정 의 결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되는 시점(매 3년째의 <u>12월 31일까지를</u>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 ----- ----- ----- <u>12월 31일을</u> ----- ----- -----.
수정사유 재검토기한 관련 '시점'과 '기한'의 표현이 섞여 있어 문언상 불명확하여 특정 시점으로 규정하도록 개선	

□ 위원장 인사말씀

○ 해양경찰의 실종신고 처리절차 등에 대한 설명 요구

- 해양경찰의 실종은 신고 단계부터 생명에 즉각적인 위험이 있는 상황으로 보고 대응하고 있음. 신고 초기 실종자 수색을 최우선으로 실시하는 한편 행적 추적·CCTV 확인·현장 탐문 등을 병행하고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정식 수사로 전환함. 해양에서의 실종은 환경에 따라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합동 수색을 전제로 하는 등 개인의 판단만으로 실종사건을 종결하기 어려운 구조임.

□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수색구조 규정」 제정안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이미 항공기 조난을 포함한 수색구조에 대해 중앙구조본부(해경청), 광역구조본부(지방청), 지역구조본부(해경서) 체계가 있는데, 지방청에 별도의 항공구조조정본부를 두면 본청의 지휘·총괄 기능이 불분명하지 않은지?
- 항공구조조정본부는 지방청에서 항공정보 수신·관제·유관기관 소통 등을 수행하는 기능이고, 기존 「수상구조법」상의 중앙·광역·지역구조본부 체계와는 별개의 개념임.

- 현장 업무기준이 되어야 할 훈령이 ICAO 부속서 12 기준으로 평가에 맞춰 반영하면서 실제 국내 수색구조 체계와 규정상 체계가 달라질 가능성 및 현장 혼선 등이 우려됨. 실제 운영에 적합한 체계라면 상위법이나 제도 자체를 정비해야지 평가를 위해 별도의 규정을 만드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아 보임.

○ 제정안과 상위법 체계가 반드시 충돌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임. 항공기 조난 상황에서는 항공구조조정본부의 독자적 역할을 인정하되, 상위 단계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기존 수상구조 관련 법률에 따른 지휘체계가 함께 작동할 수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ICAO 평가 일정 등을 고려해 일단 제정안을 의결하고, 실제 사고 상황에서의 기관별 역할과 지휘체계는 후속 검토를 통하여 보완하길 바람.

- 기존 「수상구조법」에서 중앙구조본부의 조정·지휘·통제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이 지방청 RCC의 독자적 운영을 전제로 한다면 실제 법체계와 상충할 수 있으므로 의결에는 동의할 수 없음.
- 평상시 또는 소규모 사고에서는 지방청 주관 RCC가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만, 대형 항공기 사고 발생할 경우 본청 등 상위기관이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지휘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는데 규정상 독립적인 RCC와 실제 대응체계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현재 논쟁은 항공구조조정본부의 독립적 운영에 대해 안전부서에서 확정적으로 대답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음. 항공구조본부가 지방청에 설치된다고 해서 「수상구조법」상 중앙·광역·지역 구조본부 체계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아니며, 중앙구조본부와 완전히 독립된 체계로 보기는 어려워보임.
-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므로, 제정안은 수정의결하되 소관부서에서는 소규모·대형 항공기 사고를 각각 가정해 어느 기관이 개입하고 어떤 지휘체계로 구조활동이 이루어지는 지 시나리오 형태 등으로 정리하여 추후에 보고할 것.